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69 발의연월일: 2024. 12. 10.

발 의 자: 김재원 · 김선민 · 황운하

조 국 • 한정애 • 이학영

김준형 · 정준호 · 차규근

문정복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해제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시설을 파괴 하며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불법으로 체포하기 위한 무장 계엄병력 을 국회 본청에 투입하는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함.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시에도 계엄사령관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을 지휘·감독할 뿐 국회의 활동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세력은 군대의 불법적인 동원을 통하여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된 국회의 영역을 명백하게 침범한바, 불 법적인 계엄을 막고 국회의 정당한 입법과 대정부 견제 활동을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도록 법률의 개정이 필요해 보임.

이에 「대한민국 헌법」에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열 거하고 있는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 ·일정 직위 이상의 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과 현행법에 따라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선포된 계엄이 헌법이나 법률을위배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3시간 이내에 신속히 표명하도록 함으로써내란 사태에 대한 주요 공직자의 동조를 방지하고, 국민 불안을 조기에 안정시키며, 향후 선포된 계엄이 위헌이나 불법적인 것으로 판명될경우 이에 대한 정치적 또는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4조의2 신설).

또한, 대통령, 국방부장관 및 계엄사령관(이하 "대통령등"이라 함)은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국회의 기능과 보좌직원을 포함하여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의장과 그 직무를 대리 또는 대행하는 국회부의장(이하 "국회의장등"이라 함)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이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을 넘어서 국회에도 적용되거나 계엄사령관이 행하는 포고령 등 특별조치권이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함이 명백한 때에는 대통령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계엄 전체가 당연 해제되어 국회의장등이 즉시 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계엄 선포에 대한 의견 표명 의무) ①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을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장은 선포된 계엄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3시간이내에 표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여야 하는 법관,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받을 행정기관의 직위 및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회가 요구하여 계엄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 즉시 계엄이 해제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국회의 입법활동 보장) ① 대통령, 국방부장관 및 계엄사령 관(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등"이라 한다)은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보좌직원의 활동을 포함한다)을 방해할 수 없다.

- ② 국회의장 또는 「국회법」 제12조에 따라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 또는 대행하는 국회부의장(이하 이 조에서 "국회의장등"이라 한다)은 계엄사령관의 제8조에 따른 지휘·감독이 국회에도 적용되거나 제9조에 따른 특별조치권이 제1항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중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③ 대통령등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 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제가 되는 계엄은 당연 해제되고, 국회 의장등은 즉시 이를 공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4조의2(계엄 선포에 대한 의견
	표명 의무) ① 국무총리·국무
	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
	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
	감사위원 및 제8조제1항에 따
	<u>라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u>
	받을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
	의 장은 선포된 계엄이 헌법이
	나 법률을 위배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3시
	간 이내에 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
	하여야 하는 법관, 계엄사령관
	의 지휘・감독을 받을 행정기
	관의 직위 및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생 략)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	2
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	
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다만, 국회가 요구하여 계엄을

③ (생 략) <신 설> <u>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회 본회</u> 의 의결 즉시 계엄이 해제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국회의 입법활동 보장)
① 대통령, 국방부장관 및 계엄
사령관(이하 이 조에서 "대통
령등"이라 한다)은 계엄이 선
포된 경우에 국회의 기능과 국
회의원의 활동(보좌직원의 활
동을 포함한다)을 방해할 수
없다.

② 국회의장 또는 「국회법」
제12조에 따라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 또는 대행하는 국회
부의장(이하 이 조에서 "국회의장등"이라 한다)은 계엄사령
관의 제8조에 따른 지휘·감독이 국회에도 적용되거나 제9조에 따른 특별조치권이 제1항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중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그 전제가 되는 계엄은 당

연 해제되고, 국회의장등은 즉시 이를 공고할 수 있다.